

『한원』注文에 인용된 『高麗記』 - 필자와 작성연도를 중심으로 -*

譯 전상우**

-
- I. 머리말
 - II. 『고려기』의 일문
 - III. 『고려기』의 저자와 작성연도
 - IV. 맺음말
-

I. 머리말

고구려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 중의 하나로 후쿠오카 다자이후 텐만 구(福岡縣 太宰府 天滿宮) 소장 『한원(翰苑)』 번이부(蕃夷部)의 영본(零本) 1권¹⁾(이하 통칭에 따라 서고십본(西高辻本)²⁾으로 함)에 주(註)로

* 이 글은 吉田光男, 1977, 「翰苑註所引高麗記について」, 『朝鮮學報』 85 輯을 번역한 것이다.

** 단국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1) 『翰苑』은 다음의 두 가지 影印版이 있다.

① 京大舊鈔本, 1922, 『翰苑』, 『京都帝國大學舊鈔本』1. 원본이 卷子本인 것을 본래 크기대로 83장으로 분할하여 영인했고, 卷尾에 内藤虎次郎의 跋文을 기재했다.

② 竹内理三, 1977, 『翰苑』, 吉川弘文館. 원본을 2/3의 크기로 영인하여 89쪽으로 분할하고 해석문, 교정문, 해설을 기재했다. 본고의 해석문, 교정문과 비교하기 바란다.

2)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太宰府 天滿宮 宮司 西高辻家の 전래를 따른 것이

인용된 『고려기(高麗記)』³⁾의 일문(逸文) 13조가 있다. 서고십본은 『한원』의 유일한 잔권(殘卷)으로서⁴⁾ 귀중하며, 1954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서고십본의 가치는 단지 『한원』의 유일한 잔권이라는 한 가지뿐 만이 아니다. 7세기 이전 중국 주변 제종족(諸種族)에 관한 고문헌, 특히 산일(散逸)해 완본이 현전하지 않거나 서고십본에 의해 처음 그 존재가 알려진 것 등 각종 귀중한 고문헌을 주로 수록하고 있어 실제 이용 가치가 높은 사료이다.⁵⁾ 『고려기』도 그러한 고문헌의 하나이다.

기 때문이다.

- 3) 뒤에 게재할 해석문과 같이 西高辻本 『翰苑』에는 『高麗記』와 『高麗記』 두 가지 표기가 있다. 본고는 行論이 수립되는 과정을 고려하여 『高麗記』로 통일한다.
- 4) 『翰苑』은 唐代 초기 顯慶 5년(660) 무렵 張楚金이 찬술한 類書이다. 그 書名은 北宋 말에 宋朝의 史庫에 현존했던 書目을 기록한 『崇文總目』 卷31, 類事類下(『錢餉輯釋本』 卷3)와 『宋史』 卷207, 志160, 藝文6, 類事類를 마지막으로 기록에서 사라진다. 따라서 宋朝의 南遷 전후에 중국에서는 망실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翰苑』의 일본 전래는 『日本國見在書目』 雜家(『續群書類聚』 卷884)에 기재되어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西高辻本은 아마도 그 일부일 것이다. 이상에 대해서는 內藤虎次郎, 1922, 『舊鈔本翰苑に就きて』, 『支那學』2-8 原載; 1928, 『研幾小錄』, 弘文堂 所收; 1970, 『內藤湖南全集』7, 築摩書房 再錄. 또한 內藤虎次郎 자신이 漢譯한 京大舊鈔本 『翰苑』에 跋文으로 付載한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西高辻本 외에 『翰苑』의 逸文을 수록한 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秘府略』 卷864(古典保存會影印, 1929), 『秘府略』 卷868(副本協會影印, 1923). 이상은 모두 『續群書類聚』 卷883 所收. 『香字抄』(貴重圖書影本刊行會影印, 1933), 『藥字抄』(貴重圖書影本刊行會影印, 1936). 이상은 모두 『續群書類聚』 卷894 所收.
- 5) 西高辻本 주 인용 書目은 다음과 같다. 단, 순서는 원본의 인용 순서를 따른다. 또한 逸書는 번호의 숫자를 ○ 안에 표기했다.
西高辻本 『翰苑』 蕃夷部 주 인용 書目

No	1	2	3	4	⑤	⑥	⑦	8	⑨	10	⑪	⑫	13	14	15	⑬	⑰	19	⑳	㉑	㉒	23	㉔
書目名	毛詩	漢書	史記	後漢書	續漢書	宋春秋	漢名臣奏	風俗通義	魏略	後魏書	高麗記	十六國春秋	三國志	周禮	南齊書	職貢圖	括地志	宋書	東夷記	肅慎國記	鄴中記	山海經	廣志
編著者	班固	司馬遷	范曄	司馬彪	王琰	應劭	魚豢	魏收	崔鴻	陳壽	蕭子顯	梁元帝	魏王泰	沈約	陸翽	郭義恭							

『고려기』의 일문 13조는 그 내용의 복잡함, 상세함 및 7세기로 추정되는 동시대성 등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료로 여겨지고 있다.⁶⁾ 그 자체에 이론은 없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사료로서 연구에 이

記載條	匈奴高麗	匈奴高麗倭國兩越	匈奴	西羌과西域을 제외한전부	鮮卑高麗	鮮卑	鮮卑	鮮卑	鮮卑	夫餘三韓高麗肅慎倭國	高麗百濟	高麗	高麗	高麗新羅百濟倭國	高麗	高麗新羅	高麗	新羅百濟肅慎倭國	新羅	百濟倭國	百濟	肅慎	肅慎	肅慎	倭國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高麗記』를 주요한 사료의 하나로 이용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이는 고구려사 연구 자체가 적은 것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高麗記』에 원인이 있지는 않다. 해당 연구들을 나열하면 일본어로는 池内宏, 1926, 「高句麗の五族及び五部」, 『東洋學報』16-1 原載 ; 1951, 『滿鮮史研究』 上世編, まさき会祖國社, 所收 ; 内藤虎次郎, 1929, 「近獲の二三史料(六)-三墓誌に出でたる高麗官職」, 『読史叢錄』, 弘文堂, 原載 ; 1970, 『内藤湖南全集』7, 築摩書房, 所收 ; 末松保和, 1932, 「新羅の軍號『幢』について」, 『史學雜誌』43-12, 原載. 본편은 후에 내용의 일부를 보정한 후에 전반을 「新羅建國考」, 후반을 「新羅幢停考」로 제목을 바꾸었고, 전체는 1954,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所收 ; 1962, 「朝鮮古代國家の軍事組織」, 『古代史講座』5, 學生社, 原載. 후에 내용의 일부를 보정하여 「朝鮮三國二高麗の軍事組織」으로 제목을 바꾸었고, 1964, 『靑丘史草』1, 自家版 所收 ; 矢沢利彦, 1954, 「高句麗の五部について」, 『埼玉大學紀要』人文社会科学編3 ; 宮崎市定, 1959, 「三韓時代の位階制について」, 『朝鮮學報』14 原載 ; 1976, 『アジア史論考』中, 朝日新聞社 所收 ; 越田賢一郎, 1972, 「高句麗社會の變遷」, 『史苑』33-1 ; 山尾幸久, 1974, 「朝鮮三國の軍區組織-コホリのミヤケ研究序説」, 『古代朝鮮と日本』, 竜溪書舎 所收. 한국어로는 李弘植, 1956, 「淵蓋蘇文에 대한 若干의 存疑」,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原載 ; 1971,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所收 ; 金哲堉, 1956,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原載 ; 1975,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出版社, 所收. 또한 이하의 논고도 내용의 일부에서 『高麗記』를 언급하고 있다. 참조하기 바란다. 일본어로는 三品彰英, 1954, 「高句麗王都考-三國史記高句麗本紀の原典批判を中心として」, 『朝鮮學報』1 ; 村上四男, 1966, 「新羅と小高句麗國」, 『朝鮮學報』3·738 合輯號 原載 ; 旗田巍·井上秀雄共編, 1974, 『古代の朝鮮』, 學生社 所收 ; 武田幸男, 1967, 「魏志東夷傳にみえる下戸問題」, 『朝鮮史研究會論文集』3 原載 ; 『古代の朝鮮』 所收. 한국어로는 로

용하기에는 약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신뢰할 만한 교정문이 없다는 것과 둘째,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고려기』 그 자체의 저자와 작성연도 등 사료로서의 기본적인 성격이 무엇 하나 해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려기』는 후대의 기록에서 그 명칭을 발견할 수 없고, 서고십본에 남은 일문이 그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전부이다. 여기에 앞서 말한 두 가지의 문제를 갑자기 해결하기 어려운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는 『고려기』의 일문 전체 기사를 교정한 뒤에 그 내용을 분석하고, 『고려기』의 저자와 작성연도 두 가지를 해명할 것이며 사료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교정부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서고십본이 필사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오자·탈자·연자(衍字)가 많아 일정한 교정을 거치지 않고는 내용 분석을 할 수 없는 점, 여기서 교정을 행하는 것 자체가 향후 연구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 두 가지 때문이다.

Ⅱ. 『고려기』의 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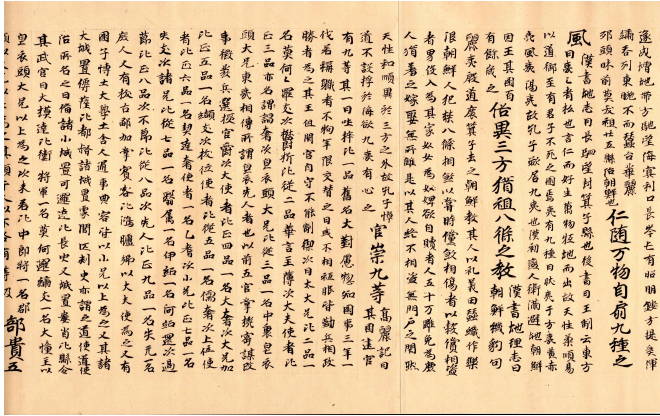
1. 해석문

교토대학(京都大學) 영인본에 따라 『고려기』 일문의 해석문을 제시한다(『고려기』 일문의 해석문은 교토대학의 영인본에 따른다). 또한 해석문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했다. 원문의 오자(誤字)·속자(俗字)는 통용자

정한, 1958, 「고구려에서의 토지서유관제」, 『삼국시기의 사회경제구성에 관한 토론집』.

- 7) 誤字라고 해도 1, 2획을 틀린 것에 불과한 것이 많아 대부분은 正字의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석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만 설명을 추가해 둔다. (A)의 제86자(이것을 A86으로 하고 이하 이것을 따름) 「鬱」은 상부 중앙을 「夕」로 하고, 민갓머리 이하의 부분을 「爵」의 제5획 이후와 같이 하였다. 「爵」의 오기로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이후에 대조한 『通典』이 같은 글자를 「鬱」로 하고 있으므로 그 別字 「鬱」의 오기로 본다. (A280) 「鄒」, 좌방이 「ㄨ」와 「田」을 상하로 겹친 습자로 되어 있다. 『後漢書』 卷85, 列

(通行字体)로 정정하고, 오자는 ○를, 속자는 △를 해당자 오른쪽 옆에 표기하였다. 정자(正字)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오자는 원문대로 하고, 해당자 오른쪽 옆에 ㄹ(인용부호)를 붙였다. 또한 읽기 쉽도록 전체에 구독점을 찍었으며, 책 이름은 『』으로, 『고려기』의 문장은 「」으로 둘렀다. 그리고 원본의 순서에 따라 각 항의 서두에 (A)~(M)의 부호를 붙였다.⁸⁾



<사진 1> 『한원』 번이부 인용 『고려기』의 일부
(해군사관학교 박준형 교수 제공)

傳75, 東夷, 高麗條에 「古鄒大加」라 하고, 『通典』이 같은 글자를 「雛」로 하여 이렇게 읽었다. (A332) 「處」, 兩 윗머리와 豕의 합자로 되어 있다. 處의 俗字 「處」의 誤記로 본다. (C7) 「雜」, 旁을 「亲」로 하였다. 뒤에 고정된 것처럼 이것은 「新」의 誤記이지만, 자형이 유사한 「雜」의 오기로 본다. (G24) 「達」, 旁을 「ス」로 하였다. 이것을 「大」의 誤記로 보고 「達」의 俗字로 읽었다. (J88) 「潔」, 「刀」를 「刃」으로 하고, 또한 「糸」를 빠뜨렸다. 『通典』에는 이 한 글자가 없다. 西高辻本은 이 글자의 오른쪽 옆에 조그맣게 「~」로 표시하여 衍入을 나타내고 있다. 필자 중도에 衍入임을 알고 획의 일부를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 8) 각 條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A) 官崇九等○, (B) 部貴五宗, (C) 南蘇○表戊驗容恪之先鳴, (D) 平郭○開境○紀馮弘之失策, (E) 王頡逐北銘勳不耐之城○, (F) 淪碑尚在耿夔△播美於遼城○, (G) 馬嶽○辟洞穴○以霏雲, (H) 焉骨巉巖竦二峯而功漢, (I) 銀磔涵輝凝鮮疊嶼, (J) 波騰碧激○驚天險以浮刀, (K) 浪接黃川藹樓○雉而驚箭, (L) 獸珺文豹器重良弓, (M) 佩刀礪而見等○威金羽以明貴賤.

(A) 『高△麗記』曰 「其國建官有九等，其一曰吐粹，比一品，舊名大對○盧，總知國事，三年一伐，若稱職者，不拘○年限，交替之日，或不相_互服，皆勒○兵相政，勝者爲之，其王但閉△宮自守，不能制禦，次曰太大兄，比二品，一名莫何_~羅支，次鬱○折，比從二品，華言主簿，次大夫使者，比正三品，亦名謂謁奢，次皂衣頭大兄，比從三品，一名中裏皂衣頭大兄，東夷相傳所謂皂衣先人者也，以前五官，掌機密，謀改事，徵發兵，選授官爵，次大使者，比正四品，一名大奢，次大兄加，比正五品，一名纒支，次拔位使者，比從五品，一名儒奢，次上位使者，比正六品，一名契達○奢使者，一名乙者，次小兄，比正七品，一名失支，次諸兄，比從七品，一名翳屬，一名伊紹，一名河紹還○，次過節，比正八品，次不節，比從八品，次先人，比正九品，一名失元，一名庶人，又有拔古鄒○加，掌賓客，比鴻臚卿○，以大夫使爲之，又有國子博○士·大學士·舍人·通事·典容，皆以小兄以上爲之，又其諸大城置傳薩，比都督，諸城置○處○閭匹，刺史，亦謂之道使，道使治所，名之曰備△，諸小城置可邏達○，比長史，又城置○婁○肖，比縣○令，其武官，曰大模達○，比衛○將軍，一名莫何邏繡○支，一名大幢主，以皂衣頭大兄以上爲之，次未若，比中郎將，一名郡頭，以大兄以上爲之，其領千人，以下各有等○級」.

(B) 「五部皆貴人之族也，一人內部，卽『後漢書』桂樓○部，一名黃部，二曰北部，卽絕奴部，卽絕奴部，卽名後部，一名黑部，三曰東部，卽順奴部，一名在部，一名上部，一名青部，四曰南部，卽灌○奴部，一名前，一名赤部，五曰西部，卽消奴部也，一名右部，其北部如燕，內部姓高，卽王族也，高麗稱無姓者，皆內部也，又內部雖爲王宗，列在東部之下，其國從事，以東爲首，故東部居上」.

(C) 『高△麗記』云 「城○在雜○城○北七十里山上也」.

(D) 『高△麗記』曰 「平郭○城○，今名建安城○，在國西，本漢平郭○縣○也」.

(E) 『高△麗記』曰 「不耐城○，今名國內城○，在國東北六百七十里，奔漢而不縣○也」.

(F) 『高△麗記』云 「故城○南門有碑，年久淪○沒，出土數尺，

卽耿夔△碑之者也」.

(G) 『高△驪記』曰 「馬多山, 在國北, 高△驪之中, 此山最○大, 卅里間, 唯通達○馬, 雲霧歛○蒸, 終日不霽, 其中多生人參○·自附子·防風·細辛, 山中有南北路, ~東有石壁, 其高△數○仞, 下有石室, 可客千人, 室中有二穴, 莫○測深淺, 夷人長老相傳云, 高驪先祖朱蒙, 從夫餘至此, 初未有馬, 行至此山, 忽見群馬出穴中, 形小向酸, 因號馬○多山也」.

(H) 『高△驪記』云 「焉骨山, 在國西北, 夷言屋山, 在平壤西北

七百里, 東西二嶺, 壁立千仞, 自足至, 須皆是蒼石, 遠望巉巖,

狀類○荊門三峽, 其上無別草木, 唯生青松, 擢幹○雲表, 高△

驪, 於南北硤口, 築○斷爲城○, 此卽夷藩樞要之所也」.

(I) 『高△驪記』云 「銀山, 在安市東北百餘里, 有數○百家, 採之以供國用也」.

(J) 『高△驪記』云 「馬訾水, 高△驪一名淹水, 今名鴨淥水, 其國相傳云, 水魚出東北靺鞨○國○白, 水色似鴨頭, 故俗名鴨淥水, 去遼東五百里, 經國內城○南, 又西與一水合, 卽鹽難也, 二水合流, 西南至安平城○入海, 高△驪之中, 此水最○大, 波瀾清潔○澈, 所經津濟, 皆(耳+守)ㄹ大船△, 其國恃此, 以爲天塹○, 今案, 其水闊三百步○, 在平壤城西北四百五十里也」.

(K) 『高△驪記』云 「其水闊百餘步○, 平流清淥, 又多灣潭枝派, 兩岸生長柳, 家密可藏兵馬, 兩畔彌, 總名遼澤○, 多生細草萑蒲, 毛群羽族, 朝夕相霧, 須臾卷斂○, 狀若樓雉○, 卽『漢書』所謂蜃氣是」.

(L) 『高△驪記』曰 「今, 高△國兼○有朝○鮮·穢·狃·沃○沮之地○也」.

(M) 『高△驪記』云 「其人亦造錦, 紫地纈文者爲上, 次有五色錦, 次有雲布錦, 又造白疊布·青布而尤佳, 又造郭, 曰華言接籬, 其毛卽靺○鞨○猪髮也」.

여기에서 ‘『고려기』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를 『고려기』의 일문으로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씨의 지적에⁹⁾ 따른 것으로, 본래 (B)는

『魏略』曰 「其國大有五族，有涓奴部·順准奴部·樓桂樓部，爲土微弱，桂樓部代之」.

의 뒤를 이으므로 언뜻 『위략』의 일부로 보인다. 그런데 다음 절에서 비교 검토할 것처럼 (B)는 약간 생략되어 『통전(通典)』 권186·변방2·동이하·고구려조(이하 『통전』 고구려조로 함)의 당대(唐代) 부분에 채록되어 있다. 따라서 (B)는 당대의 사료에 있으므로 『위략』의 일부라 할 수 없다.¹⁰⁾ 게다가 『통전』에는 사이에 약간의 기사를¹¹⁾ 두면서 (A), (B), (J)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이는 일련의 자료로 이해하는 편이 타당하다. 이케우치 히로시씨의 지적에 따라 (B)는 (A), (J)와 같이 『고려기』의 일문이라고 보아도 좋다. 또한 동시에 『고려기』가 당대의 사료인 것도 확인할 수 있다.

2. 『통전』·『구당서』·『신당서』와의 관계

종래부터 『고려기』를 중요한 사료로 취급해 온 이유의 하나는 그 기사 일부가 후대의 사서에 채록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단언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기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

9) 池内宏, 1951, 334~335쪽.

10) 『三國志』 卷30, 魏書30, 烏桓鮮卑東夷傳30 高句麗條에는 “本有五族, 有涓奴部·絶奴部·順奴部·灌奴部·桂婁部,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라 하여 (B)와 같은 章句는 존재하지 않으며, 裴松之의 註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池内宏, 1951, 337쪽은 (B)의 「五部皆貴人之族也」를 『高麗記』 찬자의 조작으로 단정하였다.

11) 『通典』에는 “碣石山在漢樂浪郡遼成縣, 長城起於此山, 今驗長城東截遼水而入高麗, 遺址猶存, (주 생략) 右碣石即河赴海處, 在今北平郡南二十餘里, 則高麗中爲左碣石, 又平壤城東北有魯陽山, 魯城在其上, 西南二十里有葦山, 南臨溟水.”이라 한다. 『通典』의 구성으로 보아 아마도 『高麗記』에 의거했다고 보인다.

았다.

『통전』 변방전 고구려조의 다음의 기사가 『고려기』에 의거하여 구성된 것은 내용, 표현으로 보아 분명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a1) 그 나라는 아홉 등급이 있는 관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토졸이다. 옛 명칭은 대대로이며 국사를 총괄한다. 다음은 태대형이다. 다음은 울절이다. 중화의 말로 주부이다. 다음은 태대부인사자이다. 다음은 조의두대형이다. 동이에 대대로 전하는 이른바 조의선인이다. 앞의 다섯 관은 기밀을 관장하고 정사를 모의하며 병사를 징발하고 관작을 수여한다. 다음은 대사자이다. 다음은 대형이다. 다음은 수위사자이다. 다음은 상위사자이다. 다음은 소형이다. 다음은 제형이다. 다음은 과절이다. 다음은 부과절이다. 다음은 선인이다. 또 상고추가가 있는데 빈객을 관장한다. 홍려경에 비견되며 대부사자를 상고추가로 삼는다. 또 국자박사·대학박사·사인·통사·전서객이 있는데 모두 소형 이상으로 이들을 삼는다. 또 그 여러 대성에는 녹살을 두는데 도독에 비견된다. 여러 성에는 처려근지를 두는데, 자사에 비견된다. 도사라 이르기도 한다. 그 무관은 대모달이라 한다. 위장군에 비견되며 조의두대형 이상을 대모달로 삼는다. 다음은 말객이며 중랑장에 비견된다. 대형 이상을 말객으로 삼는다. 그 다음은 1,000명을 거느리며 이하에도 각각 등급이 있다.

(a2) 또 그 나라에는 5부가 있는데, 모두 귀인의 족이다. 첫 번째는 내부이며 곧 후한 시기의 계루부이다. 두 번째는 북부이며 곧 절노부이다. 세 번째는 동부이며 곧 순노부이다. 네 번째는 남부이며 곧 관노부이다. 다섯 번째는 서부이며 곧 소노부이다.

(a3) 마자수는 일명 압록수이다. 물의 근원은 동북쪽 말갈의 백산에서 나오며 물의 색은 오리의 머리와 비슷하다. 때문에 습속에 압록수라 부른다. 요동에서 500리 떨어져 있으며, 국내성 남쪽을 지난다. 또 서쪽에서 한 물과 합해지니 바로 염난수

이다. 두 물이 합류하여 서남쪽으로 안평성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고려에서 이 물이 가장 크며, 물결이 맑고 깨끗하다. 지나는 곳의 나무에 모든 큰 배를 세워두었다. 그 나라는 여기에 의지하여 천연의 요새로 삼는다. 그 물의 넓이는 300보이며 평양성 서북쪽 450리, 요수 동남쪽 480리에 있다.

그런데 다음의 『구당서(舊唐書)』·『신당서(新唐書)』 기사도 『고려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직접 『고려기』에 의거하지 않고 『통전』에서 간접인용(孫引)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점을 검토해 보자.

『구당서』 권199상, 열전149,동이, 고려조(이하 『구당서』 고려전으로 함).

(b1) 그 관은 가장 큰 사람을 대대로라 부르며 1품에 비견된다. 국사를 총괄하며 3년에 1번 교대한다. 만약 직에 알맞은 자가 있으면 연한에 얽매이지 않는다. 교체하는 날에 혹 서로 승복하지 않으면 모두 병사를 정돈하여 서로 공격해 승자를 대대로로 삼는다. 그 왕은 단지 궁을 닫고 스스로 지킬 뿐 제어하지 못한다. 다음은 태대형이며, 정2품에 비견된다. 대로 이하의 관은 모두 12등급이다. 지방에는 주현 60여 성을 설치했다. 대성에는 녹살 한 명을 두는데 도독에 비견된다. 여러 성에는 도사를 두는데, 자리에 비견된다. 그 아래에는 각각 요좌가 있으며 관청의 업무를 분장한다.

이는 『통전』에서 인용한 문장은 아니다. 「3년에 1번 교대한다.」부터 「제어하지 못한다.」까지의 부분 및 「정2품에 비견된다.」는 『고려기』에 있고 『통전』에는 없다. 『고려기』(A)에 따라 문장을 구성한 것은 확실하다. 「그 아래에는 각각 요좌가 있으며 관청의 업무를 분장한다.」라고 있는 것도 『고려기』의 내용을 간략화한 것에 불과하고, 거기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다. 다만 약간의 문제가 남는다. 「대로 이하의

관은 모두 12등급이다.」와 「지방에는 주현 60여 성을 설치했다.」의 두 문장이 『고려기』의 기사와 대응하지 않는다. (A)에는 15개의 관위(官位)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관은 모두 12등급이다.」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마도 이것은 『수서(隋書)』 권81, 열전46, 동이, 고려의 기사에

관에는 대대형(大大兄), 다음으로 대형(大兄), 다음으로 소형(小兄), 다음으로 대로(對廬), 다음으로 의후사(意侯奢), 다음으로 오졸(烏拙), 다음으로 태대사자(太大使者), 다음으로 대사자(大使者), 다음으로 소사자(小使者), 다음으로 욱사(褥奢), 다음으로 예속(翳屬), 다음으로 선인(先人) 모두 12등급에 있다(凡十二等).

라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생각된다.¹²⁾ 또한 「주현 60여 성」에 대해서는 달리 비교할 만한 사료가 없다.¹³⁾ 아마 『고려기』와 다른 계통의 사료일 것이다.

어쨌든 『구당서』 고려전이 『고려기』를 이용한 것만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당서』를 보자.

『신당서』 권220, 열전145, 동이, 고려조(이하 『신당서』 고려전으로 함).

(c1) 마자수가 있는데, 말갈의 백산에서 나온다. 물의 색은 오리의 머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습속에 압록수라 부른다. 국내성을 지나 서쪽으로 흘러 염난수와 합쳐진다. 또 서남쪽으로 안시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평양은 압록의 동남쪽에 있으며 큰 배로 사람들이 건너다니므로 여기에 의지하여 천

12) 『北史』 卷94, 列傳82, 高句麗條에는 “官有大對廬·太대兄·大兄·小兄·竟侯奢·烏拙·太大使者·大使者·小使者·褥奢·翳屬·仙人, 凡十二等, 分掌内外事.”로 되어 있다.

13) 末松保和, 1964, 68쪽은 이 숫자를 「大城의 대략적인 수」라고 지적했다.

연의 요새로 삼는다.

(c2) 관은 모두 12등급이다. 대대로 혹은 토졸이 있다. 울절이 있는데 도장과 문서를 주관한다. 태대사자가 있다. 백의두대형이 있는데 소위 백의선인이다. 국정을 주관하며 3년에 1번 바꾸는데 직을 잘 수행하면 바꾸지 않는다. 무릇 교대의 날에 불복하면 서로 공격하며, 왕은 궁을 닫고 지키다가 승자를 받아들여 삼는다. 대사자가 있다. 대형이 있다. 상위사자가 있다. 제형이 있다. 소사자가 있다. 과절이 있다. 선인이 있다. 고추대가가 있다. 그 주현은 60이다. 대성에는 녹살 한 명을 두는데 도둑에 비견된다. 나머지 성에는 처려군지를 두는데 도사라고도 부르며 자사에 비견된다. 참좌(參佐)가 있어 업무를 분장한다. 대모달이 있는데 위장군에 비견된다. 말객은 중앙장에 비견된다.

(c3) 5부로 나뉜다. 내부가 있으니 곧 한의 계루부이다. 황부라고도 부른다. 북부가 있으니 곧 절노부이다. 후부라고도 부른다. 동부가 있으니 곧 순노부이다. 좌부라고도 부른다. 남부가 있으니 곧 관노부이다. 전부라고도 부른다. 서부가 있으니 곧 소노부이다.

(c1)과 (c2)는 『통전』과 『구당서』를 참작하여 문장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c2)에는 「관은 모두 12등급이다.」·「그 주현은 60이다.」라고 하여 『구당서』를 참조한 것이 명확하다. 그런데 (c3)은 『고려기』에 의거하지 않는 한 문장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구당서』에는 이것에 해당하는 기사가 없고, 5부의 별명 「후부·좌부·전부」는 『통전』에 없다. 따라서 『신당서』 고려전이 『고려기』를 참조·이용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고려기』는 『통전』·『구당서』·『신당서』의 기사에 채용되었다.¹⁴⁾ 따라서 『고려기』는 최소한 위의 세 사서의 편찬 시

14) 이와 마찬가지로 『後漢書』 卷85, 列傳75, 東夷, 高句麗條의 “案今高驪五部, 一曰內部, 一名黃部, 卽桂婁部也, 二曰北部, 一名後部, 卽絕奴部也, 三曰東部, 一名左部, 卽順奴部也, 四曰南部, 一名前部, 卽灌奴部也, 五曰西部,

점에는 존재했다. 또한 기사에 채록된 것이 관위·관직·5부 등 정치 기구에 관한 것임을 보면, 『고려기』는 고구려 멸망 이후에 남은 고구려 관계 자료로서는 아마도 가장 상세하고 종합적이었을 것이며, 또한 위의 세 사서의 편찬자들도 그 가치를 높게 평가했음이 틀림없다.

이상을 요약하면, 『고려기』가 『통전』·『구당서』·『신당서』의 기사에 채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교정문

서고십본 『한원』이 보기 힘든 악사본(惡寫本)이라 불리듯이, 『고려기』의 일문은 그대로는 의미가 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미 『요해총서(遼海叢書)』에서¹⁵⁾ 『한원』 전체의 교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고려기』의 부분에 한정해서 말하면, 『요해총서』의 해석에도 명백한 오류가 많다. 게다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교정을 마냥 신용하기는 어렵다.¹⁶⁾

이에 『고려기』를 이용한 것이 확실한 『통전』 등을 참조하여 필자 나름의 교정을 해 볼 생각이다. 또한 정정·삭제·보충하는 것은 원문 그대로는 의미가 통하기 어려운 부분에 한정하며, 문장의 의미를 변경하거나 고유명사를 정정하는 일은 최대한 하지 않았다.¹⁷⁾

교정 기호는 아래의 것을 이용하며, 해당 문자의 오른쪽 옆에 붙였다. 또한 명백한 연자를 삭제한 것은¹⁸⁾ 일일이 제시하지 않았다.

一名右部, 卽消奴部也.”라는 章懷太子의 註도 『高麗記』에 따른 것이 분명해진다. 이 점에 대해서는 池内宏, 1951, 334~335쪽 참조.

15) 金毓勳編, 1934, 『遼海叢書』8, 石文閣.

16) 『遼海叢書』의 오류를 제시하면 (A263) 「人」을 「生」, (B79) 「一」을 「又」, (D19) 「郭」을 「城」으로 한 오역과 (B96~100) 「其北部如燕」의 탈락 등이 있다. 또한 佐藤進, 1976, 「類書〈翰苑〉の注末助字-併せて遼海叢書の校書を窺う-」, 『富山大學文理學部文學科紀要』4도 참조하기 바란다.

17) 첫째, 西高辻本の 서사 연대(884년 이전. 內藤虎次郎, 1970, 119쪽 참조)가 『通典』 등의 현행 판본의 작성 연대보다 오래된 점 둘째, 『通典』 등이 『高麗記』를 옮겨 적으면서 자구의 변경이 있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셋째, 『通典』 등의 현재 판본이 초판이 아니라는 점 등에 따른 것이다.

[교정 기호]

- 의미를 가지고 고친 것
- 의미를 가지고 보충한 것
- ㊤ 『통전』에 의거한 것
- ㊦ 『구당서』에 의거한 것
- ㊨ 『신당서』에 의거한 것
- ◎ 『요해총서』의 교정에 따른 것

(A) 『高麗記』曰 「其國建官有九等, 其一曰吐粹, 比一品, 舊名大對盧, 總知國事, 三年一代㊦, 若稱職者, 不拘年限, 交替之日, 或不相祇㊦服, 皆勒兵相攻㊦, 勝者爲之, 其王但閉宮自守, 不能制禦, 次曰太大兄, 比二品, 一名莫何~羅支, 次鬱折, 比從二品, 華言主簿㊤, 次大夫使者, 比正三品, 亦名謂謁奢, 次皂衣頭大兄, 比從三品, 一名中裏皂衣頭大兄, 東夷相傳所謂皂衣先人者也, 以前五官, 掌機密, 謀政㊤事, 徵發兵, 選授官爵, 次大使者, 比正四品, 一名大奢, 次大兄加, 比正五品, 一名纈支, 次拔位使者, 比從五品, 一名儒奢, 次上位使者, 比正六品, 一名契達奢使者, 一名乙奢, 次小兄, 比正七品, 一名失支, 次諸兄, 比從七品, 一名翳屬, 一名伊紹, 一名河紹還, 次過節, 比正八品, 次不節, 比從八品, 次先人, 比正九品, 一名失元, 一名庶人, 又有拔古鄒加, 掌賓客, 比鴻臚卿, 以大夫使者爲之, 又有國子博士㊤·大學博㊤士㊤·舍人·通事·典客㊤, 皆以小兄以上爲之, 又其諸大城置偃薩, 比都督, 諸城置處閭近㊤㊨支㊤㊨, 比㊤㊨刺史, 亦謂之道使, 道使治所, 名之曰備, 諸小城置可邏達, 比長史, 又城置婁肖, 比縣令, 其武官, 曰大模達, 比衛將軍, 一名莫何邏繡支, 一名大幢主, 以皂衣頭大兄以上爲之, 次未若, 比中郎將, 一名郡頭, 以大兄以上爲之, 其領千人, 以下各有等級」.

(B) 「五部皆貴人之族也, 一曰○內部, 卽『後漢書』桂樓部, 一名黃部, 二曰北部, 卽絕奴部, 卽絕奴部, 一○名後部, 一名黑部,

18) 다음이 그에 해당한다. (B24~27) 「一名黃部」, (B36~39) 「卽絕奴部」, (J88) 「潔」.

三曰東部, 卽順奴部, 一名左㊦部, 一名上部, 一名靑部, 四曰南部, 卽灌奴部, 一名前部●, 一名赤部, 五曰西部, 卽消奴部也, 一名右部, 一●名●下●部●, 一●名●白●部●,¹⁹⁾ 其北部如燕, 內部姓高, 卽王族也, 高麗稱無姓者, 皆內部也, 又內部雖爲王宗, 列在東部之下, 其國從事, 以東爲首, 故東部居上」.

(C) 『高麗記』云 「城在新城²⁰⁾北七十里山上也」.

(D) 『高麗記』曰 「平郭城, 今名建安城,²¹⁾ 在國西, 本○漢平郭縣也」.

(E) 『高麗記』曰 「不耐城, 今名國內城, 在國東北六百七十里, 本○漢不而縣也」.

(F) 『高²²⁾驪記』云 「故城²³⁾南門有碑, 年久淪沒, 出土數尺, 卽耿夔²⁴⁾碑之○碑○者也」.

(G) 『高驪記』曰 「馬多山, 在國北, 高驪之中, 此山最大, 卅里間, 唯通達馬, 雲霧歛蒸, 終日不霽, 其中多生人參·白○附子·防風·細辛, 山中有南北路, ~東有石壁, 其高數仞, 下有石室, 可容○千人, 室中有二穴, 莫測深○淺, 夷人長老相傳云○, 高驪先祖朱蒙, 從夫餘至此, 初未有馬, 行至此山, 忽見群馬出穴中, 形小而○酸, 因號馬多山也」.

(H) 『高驪記』云 「焉骨山,²⁵⁾ 在國西北, 夷言屋山, 在平壤西北七百里, 東西二嶺, 壁立千仞, 自足至頂○, 須皆是蒼石, 遠望

19) 이상 8자를 보충함으로써 5部名과 一名의 관계에 다음과 같은 일관성이 생긴다.

1. 內部, 桂婁部, 黃部 2. 北部, 絶奴部, 後部, 黑部 3. 東部, 順奴部, 左部, 上部, 靑部 4. 南部, 灌奴部, 前部, 赤部 5. 西部, 消奴部, 右部, 下部, 白部.

20) 中國 遼寧省 撫順 北關山城(渡辺三三, 1938, 『撫順史話』, 撫順新報社).

21) 中國 遼寧省 蓋平 東北方の高麗城子(島田好, 1926, 「高句麗の安市城の位置に就て」, 『歴史地理』49-1).

22) 원문에는 이 앞에 「案」가 있어 저자의 案文으로 보인다.

23) 遼東城(中國 遼寧省 遼陽)을 가리킨다.

24) 『後漢書』卷19, 列傳9에 列傳이 있다.

25) 지형과 위치로 보아 中國 遼寧省 鳳凰의 남쪽에 있는 高麗山일 것이다. 鳳凰은 고구려 시대에는 烏骨城으로 불렸다(松井等, 1913, 「隋唐二朝高句麗遠征の地理」, 『滿州歴史地理』1, 滿鉄調査部, 384쪽).

嶮巖，狀類荊門三峽，其上無別草木，唯生青松，擢幹雲表，高驪，於南北硤口，築斷爲城，此卽夷藩樞要之所也」.

(I) 『高驪記』云「銀山，在安市²⁶⁾東北百餘里，有數百家，採之以供國用也」.

(J) 『高驪記』云「馬訾水，高驪一名淹水，今名鴨淥水，其國相傳云，水源^㉔出東北靺鞨國白山^㉕，水色似鴨頭，故俗名鴨淥水，去遼東五百里，經國內城南，又西與一水合，卽鹽難水^㉖也，二水合流，西南至安平城入海，高驪之中，此水最大，波瀾清潔激，所經津濟，皆貯^㉗大船，其國恃此，以爲天塹，今案，其水闊○三百步，在平壤城西北四百五十里也」.

(K) 『高驪記』云「其水²⁷⁾闊百餘步，平流清深○，又多灣潭枝派，兩岸生長柳，家密可藏兵馬，兩畔彌平^㉘，總名遼澤，多生細草菴蒲，毛群羽族，朝夕相霧，須臾卷斂，狀若樓雉，卽『漢書』所謂蜃氣●是也」.

(L) 『高驪記』曰「今，高國兼有朝鮮·穢·貊·沃沮之地也」.

(M) 『高驪記』云「其人亦造錦，紫地纈文者爲上，次有五色錦，次有雲布錦，又造白疊布·青布而尤佳，又造鄣，曰華言接籬，其毛卽靺鞨猪髮也」.

Ⅲ. 『고려기』의 저자와 작성연도

1. 작성연대의 범위

작성연대를 결정하는 것은 사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다. 『고려기』의 경우, 이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이케우치 히로시씨는 필자는 모르겠다고 한 후,

잔존한 부분의 내용으로 추측하면, 당 초기 고구려가 아직

26) 中國 遼寧省 英城子(島田好, 1926).

27) 大遼水を 가리킨다.

멸망하지 않은 사이에 생긴 것 같다.²⁸⁾

라고 추정했다. 이 작성연대관은 그 이후의 여러 연구에 답습되었고, 이케우치 히로시씨 이후 새로운 견해가 추가되지 않았다.²⁹⁾

이 이케우치 히로시씨의 설을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당 고조 이연(李淵)이 즉위한 무덕(武德) 원년(618) 5월 갑자(甲子, 21일)부터³⁰⁾ 이세적(李世勣)에 의해 평양성이 함락한 총장(總章) 원년(668) 9월 계사(癸巳, 12일)까지의³¹⁾ 사이가 된다. 대략적인 연대 범위로서는 옳다. 이케우치 히로시씨는 단지 「잔존한 부분의 내용으로 추측하면」이라 하여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첫 번째로 앞 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려기』가 당대의 사료인 것은 틀림없으며, 두 번째로 (L)에 「지금(○) 고국(高國)」이라 있어 고구려가 존재한 시기에 작성된 것도 확실하다. 그럼에도 이케우치 히로시씨의 설은 앞뒤의 폭이 50년에 걸쳐 있어서 너무 막연하다.

<표 1>

	1	2	3	4	5	6	7
고구려	拔古鄒加	俣薩	處閭近支	可邏達	婁肖	大模達	未若
중국	鴻臚卿	都督	刺史	長史	縣令	衛將軍	中郎將

28) 池内宏, 1951, 334쪽.

29) 山尾幸久는 「高麗(驪)記 1권은 『隋書』 經籍志에 보이지 않고, 『新唐書』 藝文志 地理類에 확인되므로 고구려 멸망 전후의 것으로 여겨진다.」(방점은 필자가 찍음)라고 서술하였다(1974, 155쪽 주). 池内宏의 설을 보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새로운 견해의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隋書』 經籍志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 곧 『高麗記』가 隋代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으며, 『高麗記』라는 명칭이 『新唐書』 藝文志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서술은 사실에 반한다(다음 절 참조). 따라서 안타깝지만 이것은 새로운 견해라고 볼 수 없다.

30) 『舊唐書』 卷1, 本紀1, 高祖.

31) 『舊唐書』 卷5, 本紀5, 高宗下.

그래서 이 절에서는 이 연대의 쪽을 조금 더 한정해 보고 싶다. 이 때 (A)에 기록되어 있는 중국의 관직명이 단서가 된다. (A)에는 고구려의 관직과 그것에 대응하는 중국의 관직이 <표 1>과 같이 7개의 사례가 기재되었다. 문제가 되는 연대 범위 내의 중국 관직 중에는 명칭이 변화한 것도 있었다. 이는 필시 『고려기』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작성 시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관직명을 비교 대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여기에 기록된 관직명은 그 시점에 존재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표 1>의 중국 관직명 전체가 동시에 존재한 시기야말로 『고려기』가 작성된 시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³²⁾

1) 홍려경

『통전』 권26, 직관8, 제경중, 홍려경조에

(상략) 수 문제(文帝) 개황(開皇) 3년 홍려시(鴻臚寺)를 폐하고 태상(太常)을 세웠다. 12년 전객(典客)·사의(司儀)·숭원(崇元) 세 부서를 다시 설치하도록 하였다. 양제(楊帝)에 이르러 소경(少卿) 2인을 두었다. 대당(大唐) 용삭(龍朔) 2년 홍려를 고쳐 사문(司文)이라 하였다. 함형(咸亨) 초 이전으로 복구하였다. (하략)

라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연대 범위 내에서는 홍려경의 명칭이 존재한 시기는 개황 12년(592)에서 용삭 2년(662)까지의 사이가 된다. 그런데 『통전』에 「대당 용삭 2년 홍려를 고쳐 사문이라 하였다」.³³⁾라는 관칭 개혁은 『구당서』 권4, 본기4, 고종상의 용삭 2년 2월 갑자(甲

32)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칭의 변화이다. 따라서 실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독 등의 관직의 실태 및 그 변질 과정에 대해서는 浜口重國, 1966, 「魏晉南北朝 隋唐史概説」, 『秦漢隋唐史の研究』下, 東大出版會를 참조하기 바란다.

33) 近衛家本 『唐六典』 卷18, 大理寺鴻臚寺의 鴻臚寺卿條에는 「改爲同文正卿」이라고 했다.

子, 4일) 기사에

수도의 여러 관청 및 백관의 이름을 고쳤다. 상서성(尙書省)을 중대(中臺)로 하였다. (중략) 나머지 각각의 것도 의훈(義訓)에 따라 고친다.

라고 있는 것의 일환이었다. 이에 따라 앞의 용삭 2년은 정확하게는 같은 해 2월 갑자의 전날 즉 계해(癸亥, 3일)가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의 시기에 한정할 때, 이 용삭 2년 2월 3일이 홍려경의 존재 기간의 하한이 된다.

2) 도독

『통전』 권32, 직관14, 주군상, 도독 기사에

(상략) 대당에서 여러 주에 다시 총관(總管)을 두고 사지절 <사사는 지절을 더하였다>을 더하였다. 무덕 원년 여러 주의 총관에게 사지절을 더하였다. 5년 명(洺), 형(荊), 병(并), 유(幽), 교(交) 5주(州)를 대총관부(大總管部)로 삼았다. 7년 대총관부를 대도독부(大都督部)로, 총관부(總管部)를 도독부(都督部)로 고쳤다. (하략)

라고 하여 (대)총관부가 (대)도독부로 개칭한 것을 무덕 7년(624)이라 하였다. 당연히 이때에 장관인 (대)총관도 (대)도독으로 개칭되었다. 그런데 이 개칭 연대에 대해서는 다른 설이 있다. 『당육전(唐六典)』 권30, 삼부도호주현관리의 대도독부조는

(상략) 수에 이르러 총관부로 고쳤다. 황조(皇朝) 무덕 4년 다시 도독부로 고쳤다. 정관(正觀) 연간에 처음으로 상(上), 중(中), 하(下) 도독부로 고쳤다.

라고 하여 이것을 무덕 4년(621)의 일이라 하였다.

이것은 『통전』의 무덕 7년이 옳다. 『구당서』 본기,³⁴⁾ 『당회요(唐會要)』,³⁵⁾ 『자치통감(資治通鑑)』,³⁶⁾은 모두 이를 무덕 7년 2월 기사에 두고 있고, 각각의 사례에 있어서도 무덕 7년에 개칭된 사실이 확인된다.³⁷⁾ 『당육전』이 이를 무덕 4년으로 한 것은 아마도 『통전』의 앞 문장에 이어지는 주에

이전에 낙주(洛州)에 이미 도호부가 설치되었다. 무덕 4년 부를 폐하고 대행대(大行臺)를 설치했다(원문은 두 줄의 협주).

라고 하여 낙주도독부의 폐지를 설치로 오해한데다가, 더욱이 낙주에만 한정되는 사실을 일반적인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이종의 착오를 범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이로써 도독의 존재 기간의 상한은 확정됐다. 다만 그 날짜를 『구당서』 본기는 정사(丁巳, 17일), 『당회요』는 12일(壬子), 『자치통감』은 무오(戊午, 18)일로 하여 세 사서 사이에 며칠의 차이가 있다. 여기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 도독의 존재 상한은 무덕 7년 2월 어떤 날로 해 둔다.

3) 자사

자사는 수대에는 군태수(郡太守)로 불렸다. 『통전』 권33, 직관15, 주

34) 『舊唐書』 卷1, 本紀1, 高祖 武德 7年(624) 2月 丁巳(17)條.

35) 『唐會要』 卷68, 都督府條. 武德 7年(624) 2月 12日(壬子)과 관계되어 있다.

36) 『資治通鑑』 卷190, 唐紀6, 高祖 武德 7年(624) 2月 戊午(18)條.

37) 예를 들면 『舊唐書』 卷38, 志18, 地理1, 關內道, 慶州中都督府條에 “六年, 置總管府(중략) 七年, 改總管為都督府.”라 한다. 그런데 『舊唐書』 卷40, 志20, 地理3, 江南西道, 黔州下都督府條는 武德 2年(619)의 기사에 이어 “四年, 置都督府.”라 하여 마치 武德 4年(621)에 都督府의 설치가 행해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貞觀 4年(630)으로 해야 할 부분에서 貞觀 두 글자가 탈락한 것이다. 中華書局版, 1975, 『舊唐書』5, 1657쪽 교감기(82) 참조.

군하, 군태수조에

(상략) 대당 무덕 원년 군을 주로 고치고 태수(太守)를 자사(刺史)로 고쳤다. (하략)

라고 하여 자사로의 개칭을 무덕 원년(618), 즉 당조 성립과 같은 해라 하였다. 『당회요』 권68, 자사상은 이것보다 좀 더 상세하게

무덕 원년 6월 19일 군을 주로 고치고 자사, 별가(別駕), 치중(治中) 각 1인을 두었다. 천보(天寶) 원년 정월 12일 주를 군으로 고치고 자사를 태수로 고쳤다. (하략)

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자사의 상한은 무덕 원년(618) 6월 19일(壬辰)이 된다.

4) 장사

『통진』 권33, 직관15, 주군하, 총론군좌조에

장사(長史)는 진(秦)에서 군승(郡丞)을 두었는데 그 군의 변경 수비(邊戍)를 담당했다. 승이 장사가 되었고 병마를 주관했다. 한(漢)은 고치지 않았다. (협주 생략) 그 후 장사는 마침내 군부관(軍府官)이 되었다. 수에 이르러 군관(郡官)이 되었다. 대당 초 영휘(永徽) 2년 별가를 고쳐 장사로 삼았다. 그 후 두 직이 병치되었다. (하략)

라고 했다. 영휘 2년(651) 이후 별가도 장사로 개칭되었지만, 어쨌든 장사는 문제로 삼는 시기 전체에 걸쳐 존재했다.

5) 현령

『통진』 권33, 직관15, 현령조의 당대에 관한 부분은 현의 종류, 수

및 현령의 수를 전할 뿐³⁸⁾ 명칭 변경 사실을 전하지는 않는다. 즉 현령도 장사와 마찬가지로 문제로 삼는 시기 전체에 걸쳐 존재했다.

6) 위장군

위장군의 경우는 다소 문제가 있다. 『통전』 권29, 직관11, 무관하, 위장군조가

대당에는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당대에는 위장군이라는 무관호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당대에는 좌위장군(左衛將軍)을 비롯하여 모위장군(某衛將軍)이 다수 존재했다. 『고려기』에 위장군이 있는 것은 이들 위장군군(群)의 총칭으로 생각해도 좋다. 이들 위장군군은 문제로 삼는 시기 전체에 걸쳐 존재했다.³⁹⁾

7) 중랑장

『통전』 권29, 직관11, 무관하, 중랑장조에

(상략) 대당이 다시 제위중랑장(諸衛中郎將)을 두었다. 영휘 3년 8월 태자(太子)의 이름을 피휘하여 중랑장을 여분랑장(旅賁郎將)으로 고쳤다. 또 익군랑장(翊軍郎將)으로 고쳤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복구되었다.

라고 하여 영휘 3년(652) 8월부터 어느 시기까지의 사이에 중랑장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영휘 3년 8월에 「태자(太子)의 이름을 피휘하여」라고 있는 것은 같은 해 7월에 태자로 책립된 진왕(陳王) 충(忠)⁴⁰⁾의 「충」과 통하는 「중(中)」의 사용을 피한 사실을 말한

38) 縣令條에 이은 總論縣佐條에는 「大唐有縣令」으로 있다.

39) 『通典』 卷28, 職官10, 武官上, 將軍總敘條.

다. 그런데 여기에 8월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구당서』 권4, 본기4, 고종상, 영희 3년조에

9월 정사(丁巳, 2일) 태자중윤(太子中允)을 내윤(內允)으로, 중서사인(中書舍人)을 내사사인(內史舍人)으로 고쳤다. 제술부 중랑장(諸率府中郎將)을 여분랑장(旅賁郎將)으로 고쳐 태자의 이름을 피휘했다.

라고 하여 실제로 중랑장이 여분랑장으로 개칭된 것은 같은 해 9월 정사(2일)부터였다.

중랑장의 명칭이 복구된 시기는 『통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신당서』 권49상, 지39상, 백관4상, 오부중랑장 기사에

(상략) 태자가 폐해지고 복구되었다.

라고 하여 태자 층의 폐위에 따른 조치인 것을 알 수 있다. 층의 폐위는 영희 7년(656) 정월 신미(辛未, 6일)이다.⁴¹⁾ 일단 이 날로 중랑장의 명칭이 복구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 중랑장이 존재한 것은 영희 3년(652) 9월 1일 이전 및 영희 7년(656) 정월 6일 이후가 된다.

이상 본 절에서 검토한 것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결국 (1)~(7)의 관명 전체가 동시에 존재한 것은 ① 무덕 7년(624) 2월 모일 부터 영희 3년(652) 9월 1일까지와 ② 영희 7년(656) 1월 16일부터 용삭 2년(662) 2월 3일까지가 된다. 이것은 처음에 언급했듯이 바로 『고려기』 작성 시기의 범위를 가리킨다.

40) 『舊唐書』 卷4, 本紀4, 高宗上, 永徽 3年(652).

41) 『舊唐書』 卷4, 本紀4, 高宗上, 永徽 7年(656) “春正月辛未, 廢皇太子忠爲梁王, 立代王弘爲皇太子.”

<표 2>

	홍려 경	도독	자사	장사	현령	위장 군	증랑 장
武德元 · 5. 21							
武德元 · 6. 19							
武德 7. 2 · 某日							
永徽 · 3. 9. 1							
永徽 · 7. 1. 16							
龍朔 · 2. 2. 3							
總章元 · 9. 12							

2. 필자와 작성연도

앞서 『고려기』 작성 연대의 범위가 당 초기의 어느 시기에 한정되는 것 및 『구당서』와 『신당서』가 고려전의 일부에 『고려기』를 이용한 것에 대해 서술했다. 그런데 『구당서』 경적지, 『당서』 예문지 모두 『고려기』라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별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앞의 양 지(志)의 사(史)에 기록된 지리류(地理類)의⁴²⁾

『봉사고려기(奉使高麗記)』 1권.

이라는 것이 『고려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⁴³⁾ 『한원』이 인용한

42) 『舊唐書』 卷46, 志26, 經籍上 및 『新唐書』 卷58, 志48, 藝文2.

43) 『奉使高麗記』 외에 『高麗記』와 유사한 서명은 다음의 네 가지가 있다. 모두 『高麗記』와의 관계는 불명확하다. 또한 이들은 모두 현존하지 않는다.

서목명(書目名)을 적절히 줄여서 기록한 경우가 있는 점,⁴⁴⁾ 『봉사고려기』와 같이 『고려기』에도 저자명이 부기되지 않은 점 두 가지로 보아 『봉사고려기』가 『고려기』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봉사(奉使)」라고 있기 때문에 이는 당조에서 고구려로 파견된 사절(이른바 遣高句麗使)이 기록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고려기』 즉 『봉사고려기』의 저자는 당대에 파견된 고구려 사신 중에 있다는 것이 된다.

여러 사료에 따라 당대에 파견된 고구려 사신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이것을 자세히 검토해 보자.

<표 3>

No	사신 이름	연대	사료
1	이름 없음(缺名)	무덕 5년(622)	124
2	심숙안(沈叔安)	무덕 7년(624)	1234
3	주자사(朱子奢)	무덕 9년(626)	1234
4	진대덕(陳大德)	정관 15년(641)	2345 ⁴⁵⁾
5	등소(鄧素)	정관 17년(643)	45 ⁴⁶⁾
6	이름 없음(缺名)	정관 17년(643)	124
7	상리현장(相里玄獎)	정관 17년(643)~정관 18년(644)	124
8	장엄(蔣儼)	정관 18년(644)~총장 원년(668)	5 ⁴⁷⁾

① 裴矩 撰 『高麗風俗』 1권(『舊唐書』 卷46, 志26, 經籍上, 史錄地理類 및 『新唐書』 卷58, 志48, 藝文2, 史錄地理類). 裴矩에 대해서는 『隋書』 卷67, 『北史』 卷38, 『舊唐書』 卷100, 『新唐書』 卷63에 專傳이 있지만, 모두 『高麗風俗』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② 『高麗風俗記』 1권(『高麗史』 卷10, 世家10, 宣宗 8年(1091) 6月 丙午(18))

③ 『高麗志』 7권(『高麗史』). ②와 ③은 모두 宣宗 8年(1091), 李資義가 宋에서 高麗로 가져온 書目的 하나이다.

④ 『高麗國記』 4권(『日本國見在書目』20, 土地家) 이에 대해서 内藤虎次郎는 「日本國見在書目的 土地家에 高麗國記 4권이 있는데, 여기에 인용된(『高麗記』)를 가리킨다. 吉田光男) 것과 같은 책일 것이다.」(『内藤湖南全集』 7 126쪽의 自註(1))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44) 예를 들면 『魏國志』를 『魏志』, 『風俗通義』를 『風俗通』으로 했다. 아마도 『翰苑』 편찬 당시의 통칭에 따랐을 것이다.

45) 『冊府元龜』 卷657, 奉使部, 機變.

사료란의 숫자는 다음을 가리킨다.

1 『구당서』 고려전, 2 『신당서』 고려전, 3 『통전』 변방전 고구려조,
4 『자치통감』 당기 당해년조,⁴⁸⁾ 5 『책부원귀』

1) 이름 없음(缺名)

『구당서』 고려전 기사가 가장 상세하다. 그에 따르면

(무덕) 5년 건무(建武)에게 글을 내려 (중략) 이에 건무가
화인(華人)을 모두 찾아 예를 갖추어 보냈는데 전후로 이른
사람이 1만에 달하니 고조가 크게 기뻐했다.

라고 했다. 이 내용으로는 당시의 사절과 『봉사고려기』의 관계는 알
수 없다.

2) 심숙안

이것도 『구당서』 고려전의 기사가 가장 상세하다. 그에 따르면

(무덕) 7년 전형부상서(前刑部尙書) 심숙안(沈叔安)을 보내
건무를 상주국(上柱國) 요동군왕(遼東郡王) 고려왕(高麗王)에
책봉하고 아울러 천존상(天尊像) 및 도사(道士)를 대동하여 『
노자(老子)』를 강의하도록 했다. 그 왕 및 도인(道人)과 속인
(俗人) 등 보고 듣는 자가 수 천 인이었다.

라고 한다. 이번 사절도 『봉사고려기』와의 관계는 알 수 없다.

3) 주자사

46) 『册府元龜』 卷46, 帝王部, 知識.

47) 『册府元龜』 卷661, 奉使部, 守節 및 卷662, 奉使部, 請行.

48) 『資治通鑑』 當該年條의 卷次는 다음과 같다. (1)(2) 卷190, 唐紀6, (3)
卷192, 唐紀8, (4)(5)(6)(7) 卷196, 唐紀12.

신라, 백제 양국의 호소에 따라 파견된 설유사(說諭使)이다. 이것도 가장 상세한 『구당서』 고려전의 기사에 따르면

(무덕) 9년 신라, 백제가 사신을 보내 건무를 닦하여 말했다. 「도로를 막아 입조할 수 없습니다.」 또 서로 틈이 생겨 누차 침략하니 원외산기시랑(員外散騎侍郎) 주자사(朱子奢)에게 조서를 내려 가서 화해시키도록 했다. 건무가 표를 올려 사죄하면서 신라의 사신과 대면하여 회맹하기를 청했다.

라고 한다. 이번 사절도 『봉사고려기』와의 관계는 알 수 없다.⁴⁹⁾

4) 진대덕

『신당서』 고려전에

얼마 뒤(조공을 게을리 한 것. 요시다) 태자 환권(桓權)이 조정에 와서 방물을 바치니 황제가 두텁게 보답했다. 사자 진대덕(陳大德)에게 조서를 내려 지절(持節)을 주고 노고에 답하도록 하면서 틈을 엿보게 했다. 대덕이 그 나라에 들어가 관리에게 후한 선물을 주어 그 상세함을 알게 되었다. 화인(華人)인 유객(流客)을 만나 친척들의 소식을 말해주니 사람마다 눈물을 흘렸다. 이에 이르는 곳마다 사녀(士女)가 길가에 나와 구경했다. 건무가 성대히 열병하여 사자에게 보여주었다. 대덕이 돌아와 아뢰니 황제가 기뻐했다. 대덕이 말했다. 「고창(高昌)의 멸망을 듣고 그 대대로가 객관에 세 번 이르러 축하하였습니다.」 황제가 말했다. 「고려의 땅은 4군(郡)뿐이니 내가 병사 수만을 징발하여 요동을 공격하면 여러 성이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수군으로 동래(東萊)에서 바다를 건너 평양으로 가면 매우 쉬울 것이나 천하가 겨우 평정되었으

49) 또한 『舊唐書』 卷189上, 列傳139上, 儒學上 및 『新唐書』 卷198, 列傳123, 儒學上에 朱子奢의 專傳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高麗記』와 朱子奢의 관계는 알 수 없다.

니 사람들을 수고롭게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했다. 진대덕은 고구려의 태자 환권의 입조에 대한 답례사였다. 그런데 고구려 입국 후 그의 행동에는 주의를 요한다. 「관리에게 후한 선물을 주어 그 상세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여 고구려 내부를 정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기사가 『책부원귀』 권657, 봉사부, 기변에 있다. 해당 부분을 적기 하면

당 진대덕은 직방낭중(職方郎中)이다. 정관 15년 진대덕은 고려에 사신으로 가 처음 그 국경에 들어가 그 나라의 습속을 엿보고자 하여 매번 성읍에 이르러 항상 비단을 그 관리에게 주니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대덕은 이에 말했다. 「나는 성품이 산수를 좋아하여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곳에 임천(林泉)의 승지(勝地)가 있으면 내가 가서 때때로 유람하고 싶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이를 믿고 아름다운 산수를 만나면 항상 대덕을 인도하여 보게 하니 마침내 길에 있는 굴곡을 알게 되었다. (하략)

으로, 그의 행동은 더욱 명확해진다. 아마도 상당한 정보를 수집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당서』에 있는 것처럼 「대덕이 돌아와 아뢰니 황제가 기뻐했다.」라고 한 것이다. 당에 돌아간 후 상세한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것이 『봉사고려기』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5) 등소

『책부원귀』 권46, 제왕부, 지식에 따르면

정관(貞觀) 17년 대상승(大嘗丞) 등소가 고려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회원진(懷遠鎭)에 병사를 더하여 고려를 압박

할 것을 청했다. 황제가 말했다. 「먼 곳에 가지 않고 문턱을 닦아 오게 해야지 1~200의 병사로 절역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인의충신(仁義忠信)으로 안을 다스리지 않고 병갑사졸(兵甲士卒)을 밖으로 보내 멀리서 수고롭게 하면 나라에 매우 꺼림이 있을 것이니 짐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했다. 『자치통감』 권197, 당기13은 이보다 약간 간단한 기사를 정관 17년 6월 정해(丁亥, 9일)조에 기재하여 이에 의해 등소의 귀국 시기를 알 수 있다. 이 글만으로는 등소의 파견 목적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번의 파견이 정관 16년(642)에 발생한 천개소문(泉蓋蘇文)의 정변⁵⁰⁾ 후의 첫 고구려 파견임을 고려하면, 정변 후 고구려의 정세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당에 귀국한 후 「회원진에⁵¹⁾ 병사를 더하여 고려를 압박할 것을 청했다.」라는 것으로 보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등소도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또한 『봉사고려기』의 저자일 가능성이 있게 된다.

6) 이름 없음(缺名)

『구당서』 고려전에

(정관) 17년 다음 왕 장(藏)을 요동군왕(遼東郡王) 고려왕(高麗王)으로 책봉했다.

라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봉사고려기』와의 관계는 알 수 없다.

50) 『舊唐書』 卷3, 本紀3, 太宗下 “(貞觀十六年) 是歲(642), 高麗大臣蓋蘇文弑其君高武, 而立武兄子藏爲王.” 또한 이 정변의 시기에 대해서는 貞觀 16年(642) 10月(『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25년)과 貞觀 15年(641) 9月(『日本書紀』 卷24, 皇極天皇 元年(642) 2月)의 두 설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이 榮州都督 張儉으로부터 상주된 것은 貞觀 16年(642) 11月 丁巳(5일)이므로(『資治通鑑』 卷196, 唐紀12) 전자가 옳다.

51) 中國 遼寧省 廣寧付近(松井等, 1913, 379쪽).

7) 상리현장

『자치통감』 권197, 당기13에 극명한 기록이 있다.

(정관 17년) 9월 경진(庚辰, 4일) 신라가 사신을 보내 백제가 그 나라의 40여 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다시 고려와 병사를 합쳐(連兵) 신라가 입조하는 길을 끊으려 모의했다고 말하며 병사를 보내 구원해줄 것을 빌었다. 황제가 사농승(司農丞) 상리현장(相里玄獎)에게 새서(璽書)를 지니게 하여 고려에 주도록 명하고 말했다. 「신라는 인질을 국가에 맡기고 조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너와 백제는 마땅히 각각 군사를 거두어야 한다. 만약 다시 신라를 공격한다면 다음해에 병사를 보내 너희 나라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여 신라의 구원 요청에 응하여 상리현장이 고구려를 설론(說論)하기 위해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정관 18년 봄 정월) 상리현장이 평양에 이르렀다. 막리지는 이미 병사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하여 두 성을 격파하였는데 고려왕이 사신을 보내 부르니 이에 돌아왔다. 현장이 신라를 공격하지 말도록 타이르자 막리지가 말했다. 「옛날에 수가 침략했을 때 신라는 틈을 타 우리의 땅 500리를 빼앗았습니다. 스스로 우리에게 빼앗은 땅을 돌려주지 않으면 아마도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이 말했다. 「이미 끝난 일인데 어찌 쫓아 논하겠습니까? 지금 요동의 여러 성은 본래 모두 중국 군현의 것임에도 중국은 다시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려는 어찌하여 옛 땅을 요구하여 반드시 얻으려 하십니까?」 막리지는 끝내 따르지 않았다.

라고 하여 상리현장과 막리지(천개소문) 사이에 격론이 있었음을 전한다. 상리현장은 같은 해 2월 을사(乙巳, 1일)에 귀국하여 이를 보고했다. 그 결과 당조 내부에서는 고구려 정토의 가부에 대한 격론이 있

었다(사료 생략). 그러나 이것도 『봉사고려기』와의 관계는 알 수 없다.

8) 장엄

장엄은 『봉사고려기』와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책부원귀』 권661, 봉사부, 수절을 보면

장엄(蔣儼)은 상주(常州) 의흥현(義興縣) 사람이다. (중략) 태종이 요동을 정벌하자 고려에 사신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모집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다. 오직 장엄만이 가기를 청하여 곧 오랑캐의 조정에 이르렀으나 막리지에게 잡혀 굴실에 가두어졌다. 장엄은 절의로 항거하여 굶히지 않았으니 고려가 패배하자 돌아올 수 있었다.

라고 한 것처럼 그의 귀국은 고려가 멸망한 후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 절에서 한정된 『고려기』 즉 『봉사고려기』 작성 연대의 범위 밖이 된다.

이상과 같이 사료를 검토한 결과 『봉사고려기』의 저자일 가능성을 가지는 것은 진대덕과 등소 두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봉사고려기』의 저자는 진대덕이다. 첫 번째, 진대덕이 정보 수집 활동을 한 명백한 사료가 있다. 다만 사료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료가 정보 수집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보아야 진상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 특히 정보 수집 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점은 그가 수집한 정보, 구체적으로는 그 보고서 내용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등소의 경우는 그것을 엿볼 수 없다.

두 번째, 『봉사고려기』의 저자명이 부기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고 싶다. 『봉사고려기』가 기재된 『구당서』 경적지 및 『당서』 예문지의 사에 기록된 지리류의 용례를 보면, 저자명이 부기되지 않은 것은 관청에서 작성된 것이다.⁵²⁾ 『봉사고려기』도 마찬가지로 보아도 좋다. 그런

데 일문으로 보는 한 『봉사고령기』의 내용은 고구려의 지리, 풍속이었다. 『당육전』 권5, 상서병부, 직방낭중조에

직방낭중과 원외랑(員外郎)은 천하의 지도 및 성황(城隍), 진수(鎭戍), 봉후(烽候)의 수를 관장하고, 나라(邦國), 수도와 지방(都鄙)의 멀고 가까움 및 사이(四夷)의 귀화자를 담당했다. 무릇 지도는 주부(州府)에 맡겨 3년에 한 번 작성하고 판적(板籍)과 함께 성(省)에 올린다. 외이가 매번 번객으로 수도에 올 때 홍려에 그 본국의 산천과 풍토의 조사를 맡기고 그 립으로 만들어 상주한다. 부분은 성에 올린다. 오방의 구역, 수도와 지방의 폐치, 강장의 쟁송은 의거하여 바로잡는다. (하략)

이라 한 것처럼 내외의 지리, 풍속 관계의 정보를 다룬 것은 병부성(兵部省)의 하부 기구인 직방(職方)이다. 『봉사고령기』를 작성한 관청을 직방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진대덕은 그 직방의 장관인 직방낭중이었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라면 직방의 이름으로 병부성에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에는 그 보고서에 저자명 즉 진대덕의 이름이 부기되지 않게 된다. 등소의 경우는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그 개인의 것으로 저자명을 부기하여 제출했을 것이다.

세 번째, 『고령기』의 (A)에 「첫 번째는 토졸으로 1품(品)에 비견된다. 옛 명칭은 대대로이며 국사를 총괄한다. 3년에 1번 교대한다.」라고 있던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 토졸, 대대로는 정관 16년의 정변에 따라 천개소문이 취임한 막리지에 다름 아니다.⁵³⁾ 천개소문은 국왕 및 여러 대신(大臣)을 살해하고 막리지에 취임하였고, 인덕(麟德) 2년(665)에 사망하기까지⁵⁴⁾ 그 지위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3년에 1번 교

52) 『舊唐書』經籍志, 史錄地理類에서 摘記하면 다음과 같다. 『林邑國記』, 『眞臘國事』, 『交州已來外國傳』, 『西南蠻入朝首領記』, 『職方記』, 『長安四年十道圖』, 『開元三年十道圖』, 『劔南地圖』.

53) 末松保和, 1954, 160쪽 및 322~323쪽.

대한다.』라는 것은 그 정변 이전의 규정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봉사고려기』의 원정보(原情報)가 수집된 것은 그 정변 이전이며, 등소가 그 저자일 가능성은 없어지게 된다. 다만 「3년에 1번 교대한다.』라는 것이 실상의 여하를 막론하고 고구려의 관습법을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지금 서술한 것이 등소를 배제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치통감』 권196, 당기12, 태종 정관 15년조에 따르면, 진대복(陳大復)이 귀국한 것은 8월 기해(己亥, 10일)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진대덕이 작성한 보고 즉 『봉사고려기』는 정보 수집 시기를 정관 15년(641) 상반기로 거의 확정할 수 있고 둘째, 『봉사고려기』의 작성을 정관 15년 내로 추정할 수 있다. 보고서 는 귀국 후 바로 작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본 절은 『고려기』(『봉사고려기』)가 정관 15년(641)에 고구려로 정보 수집을 위해 파견된 진대덕의 보고서인 것, 천개소문에 의한 정변 이전 고구려의 실상을⁵⁴⁾ 전한 것, 정관 15년 내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상의 세 가지를 서술했다.

IV. 맺음말

서고십본 『한원』에 일문으로 남은 『고려기』의 성격을 저자, 작성연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하 그것을 정리하여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54) 池内宏, 1941, 「高句麗討滅の役に於ける唐軍の行動」,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16, 東大文學部 原載; 1960, 『滿鮮史研究』 上世第二冊, 吉川弘文館, 273~280쪽 所收.

55) 정변 이후의 사료에는 『高麗記』에 보이지 않는 관직명이 나온다. 將軍, 三軍大將軍(679, 『泉男生墓誌』), 都督(700, 『高慈墓誌』), 中裏大活, 中軍主活(702, 『泉男産墓誌』). 그렇다면 이것은 『高麗記』에 나와 있는 관직명의 漢語譯, 혹은 異字 표기일 가능성도 높다.

『고려기』는 『구당서』¹¹ 경적지 및 『신당서』 예문지에는 『봉사고려기』로 기록되어 있다. 이 『봉사고려기』는 정관 15년(641) 내정 정찰을 위해 고구려에 파견된 진대덕의 조사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아마 정관 15년 안에 작성되었고, 직방의 이름으로 병부성에 제출되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고려기』의 일문은 정관 15년 상반기에 진대덕이 고구려에서 수집한 정보의 일부이다. 그의 파견은 아마도 당의 국가적 요청에 따라 행해졌고, 당의 대(對)고구려 정책의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한다. 보고서 내용으로 가능한 한 상세함과 정확함이 요구되었을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고려기』는 그 요구에 부응할 만한 내용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정보 수집 활동은 후대의 기록에 특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사료의 특징을 들자면 첫째, 기록 내용에서 정관 15년(641) 상반기라는 구체적인 시기가 설정될 수 있는 것 둘째, 정치 기구와 지리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한 것 셋째, 『통진』을 비롯한 후대의 사서에 원자료의 하나로 채용되었다는 것 등이다. 고구려사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고려기』가 중요하고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 고구려사 연구에 큰 위치를 차지하는 사료라는 점에 이론은 없을 것이다. 다만 종래에는 그 성격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충분히 활용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본고의 고찰에 따라 약간일지라도 『고려기』의 성격이 명확해지고 향후 고구려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제어 : 翰苑, 高麗記, 奉使高麗記, 陳大德, 通典

[투고일 : 2019.10.19, 게재확정일 : 2019.11.30]

[부기(付記)]

본고는 1976년 1월 제출한 졸업논문 『平壤遷都後の高句麗五部制度について』의 제2장 제3절을 보정하여 원고를 고친 것이다. 또한 필자는 1976년 5월부터 「翰苑硏究會」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토가와 요시오(戶川芳郎) 선생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아 『한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아울러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 선생님께서 완성된 원고를(成稿) 일독해주시고, 많은 귀중한 교시와 조언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1977년 6월 18일)

[역자 부기]

본고는 요시다 미츠오(吉田光男) 선생님께서 1977년 『朝鮮學報』 85집에 게재하신 <『翰苑』註所引「高麗記」について—特に筆者と作成年次—>을 번역한 것입니다. 부족한 역자에게 번역을 허락해주신 요시다 미츠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요시다 미츠오 선생님과의 연락을 주선해주신 일본 학습원대학(學習院大學)의 우에다 기헤이나리치카(植田喜兵成智) 선생님, 논문 번역에 도움을 주신 단국대학교 김세현, 소동섭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參考文獻】

『三國志』, 『後漢書』, 『隋書』, 『北史』, 『唐六典』, 『通典』, 『舊唐書』,
『冊府元龜』, 『唐會要』, 『新唐書』, 『資治通鑑』.

金哲竣, 1956,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李丙燾博士華甲
紀念論叢』.

金哲竣, 1975,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出版社.

로정환, 1958, 「고구려에서의 토지서유관제」, 『삼국시기의 사회경제구
성에 관한 토론집』.

李弘植, 1956, 「淵蓋蘇文에 대한 若干의 存疑」, 『李丙燾博士華甲紀念
論叢』.

李弘植, 1971, 『韓國古代史의 研究』, 新丘文化社.

金毓黻編, 1934, 『遼海叢書』8, 石文閣.

京大舊鈔本, 1922, 「翰苑」, 『京都帝國大學舊鈔本』1.

宮崎市定, 1959, 「三韓時代の位階制について」, 『朝鮮學報』14.

宮崎市定, 1976, 『アジア史論考』中, 朝日新聞社.

旗田巍·井上秀雄共編, 1974, 『古代の朝鮮』, 學生社.

內藤虎次郎, 1922, 「舊鈔本翰苑に就きて」, 『支那學』2-8.

內藤虎次郎, 1928, 『研幾小錄』, 弘文堂.

內藤虎次郎, 1929, 「近獲の二三史料(六)-三墓誌に出でたる高麗官職」, 『
讀史叢錄』, 弘文堂.

內藤虎次郎, 1970, 『內藤湖南全集』7, 築摩書房.

渡辺三三, 1938, 『撫順史話』, 撫順新報社.

島田好, 1926, 「高句麗の安市城の位置に就て」, 『歴史地理』49-1.

末松保和, 1932, 「新羅の軍號『幢』について」, 『史學雜誌』43-12.

末松保和, 1954,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 末松保和, 1962, 「朝鮮古代國家の軍事組織」, 『古代史講座』5, 學生社.
- 末松保和, 1964, 「朝鮮三國二高麗の軍事組織」, 『青丘史草』1.
- 武田幸男, 1967, 「魏志東夷傳にみえる下戸問題」, 『朝鮮史研究會論文集』3.
- 武田幸男, 1974, 『古代の朝鮮』, 學生社.
- 浜口重國, 1966, 「魏晉南北朝 隋唐史概説」, 『秦漢隋唐史の研究』下, 東大出版會.
- 山尾幸久, 1974, 「朝鮮三國の軍區組織-コホリのミヤケ研究序説」, 『古代朝鮮と日本』, 龍溪書舎.
- 三品彰英, 1954, 「高句麗王都考-三國史記高句麗本紀の原典批判を中心として」, 『朝鮮學報』1.
- 松井等, 1913, 「隋唐二朝高句麗遠征の地理」, 『滿州歴史地理』1, 滿鐵調査部.
- 矢澤利彦, 1954, 「高句麗の五部について」, 『埼玉大學紀要』人文社會科學編3.
- 越田賢一郎, 1972, 「高句麗社會の變遷」, 『史苑』33-1.
- 竹内理三, 1977, 『翰苑』, 吉川弘文館.
- 佐藤進, 1976, 「類書〈翰苑〉の注末助字-併せて遼海叢書の校書を窺う-」, 『富山大學文理學部文學科紀要』4.
- 池内宏, 1926, 「高句麗の五族及び五部」, 『東洋學報』16-1.
- 池内宏, 1941, 「高句麗討滅の役に於ける唐軍の行動」,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16, 東大文學部.
- 池内宏, 1951, 『滿鮮史研究』上世編, まさき會祖國社.
- 池内宏, 1960, 『滿鮮史研究』上世第二冊, 吉川弘文館.
- 村上四男, 1966, 「新羅と小高句麗國」, 『朝鮮學報』3:738 合輯號.

역자 【參考文獻】

국사편찬위원회, 2004, 『중국정사조선전 역주』.

김택민 주편, 2003, 『역주 당육전』, 신서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2018, 『역주 한원』.

사마광 저·권중달 역, 2009, 『자치통감』, 삼화.